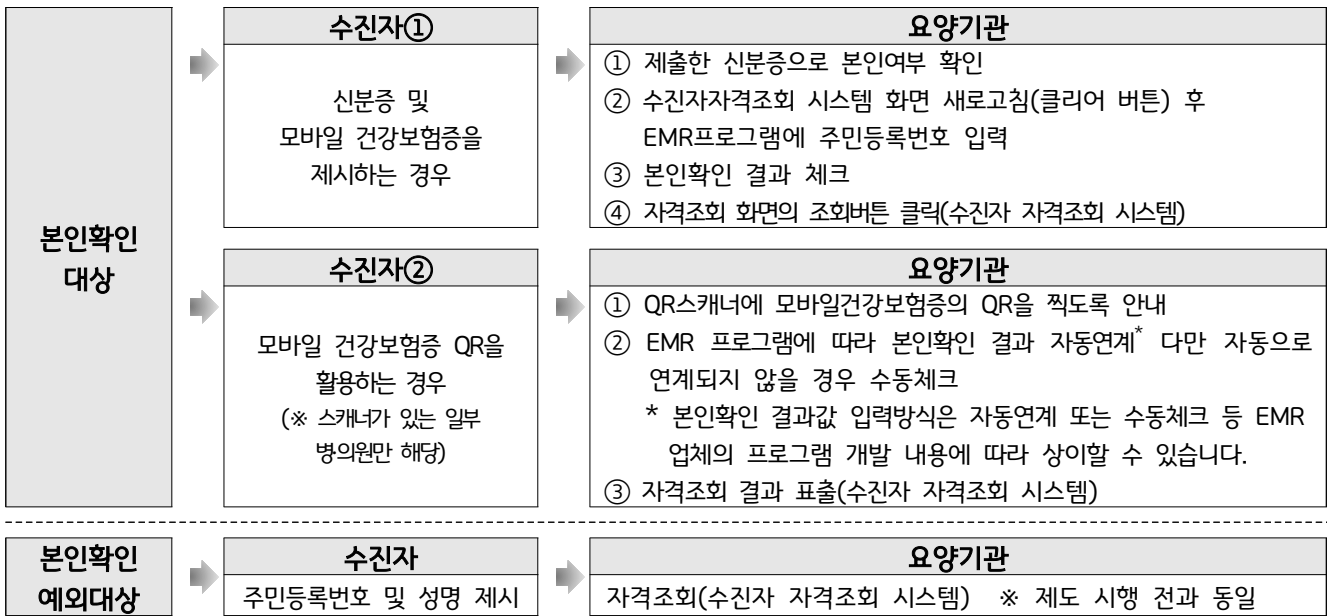


요양기관 본인 확인 강화 제도 안내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시행('24.5.20.) ※ (법적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제4항 건강보험 자격이 없거나 타인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 받기위해 **건강보험증 등을 대여·도용**하는 부정수급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부정수급을 사전에 예방하고, 올바른 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진료 전(前) 환자의 본인확인 강화 제도 도입

제도안내 본인확인 절차



제도안내 본인확인 수단 및 예외대상

본인확인 수단	
☑ 신분증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7조(일부개정)에 따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또는 서류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신여권의 경우 여권정보증명서 첨부 시 인정),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건강보험증 등 ※ 행정·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또는 서류로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것에 한함
☑ 전자증명서	- 모바일 건강보험증, 모바일 신분증,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등 (확인서비스) 정부24, PASS, KB뱅크(국민지갑), 삼성월렛 등 v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 설치) 구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애플 앱스토어에서 검색 후 설치

*** 신분증 사본(캡처, 사진 등)은 인정 불가합니다.**

본인확인 예외 대상

- 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 ② 19세 미만인 경우
- ③ 본인 확인한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진료
- ④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 ⑤ 다른 요양기관으로부터 요양급여를 의뢰 받거나 및 회송 받는 경우
- ⑥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 ⑦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등급을 받은 사람**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 ⑧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의 **임산부**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 ⑨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 또는 제5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 신분증 등이 없어 본인확인이 어려운 경우

- ① 모바일건강보험증, 모바일주민등록확인서비스 등 모바일 활용 안내
- ② 진료비를 전액 부담(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하고, **진료 후 14일 이내** 환자 본인의 신분증과 진료비 영수증 등 요양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하면 요양기관에서 정산(공단부담금 환불)해줄 수 있음을 안내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요양급여의 신청)

☞ 본인확인 결과 관리 방법

신분증 확인 후

- ① 요양기관정보마당 / 수진자자격조회시스템에 본인확인완료 버튼 체크, 또는 ② 진료기록부 등에 본인확인 내용 기록

<화면예시>

요양기관정보마당 HOME 1949 변경이력 OS개발자지원 FAQ 서비스도움말 응급차량 표현도움말 시스템오류도움말 메뉴들

요양기관설정 사용자로그인 로그아웃 로그인

기본정보	코로나19	자격확인	산정특례	치과치료	금연치료	임신중산	의료급여	재난의료	간호간병	요양급여	요양비	장복결핵	치매치료	종사자 온라인 교육
연간자금	진척여부	확개국과	표준의사	호스피스	차관현황	일자전성일손	요양영원	노연장기	장애안의료비	장애안주치의	진료바산테	급여제한어부	원가정보수집	
		다재어음	보건의료인력	시범진료지원	비급여보고									

업무메뉴 마이메뉴 자격확인 > 1110 수진자자격확인

1110 수진자자격확인 (bipaln100m01) 도움말 마이메뉴로 고정

수진자 자격확인

주민등록번호	수진자성명	진료일자	2024.01.19
--------	-------	------	------------

건강보험공병번호 조회

본인확인완료 조회

【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관련 Q&A 】

- 요양기관 정보마당 » 공지사항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국민과함께 » 뉴스/소식 » 공지사항

제도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Q&A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